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821호

「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

「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최근 전세사기 성행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예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, 악의적인 보증금 미반환임대인의 성명 등 정보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법률에서 위임한사항 규정 필요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외 (안 제27조제1항)
 -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심의・의결하는 경우 공개 제외
 -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
 - 구상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(단, 소송의 당사자가

공사와 임대인인 경우로 한정하며, 판결 등으로 구상채무가 확정된 경우 는 제외)

- 임대인이 구상채무의 100분의 50 이상을 자발적으로 변제하고, 잔여 채 무에 대한 변제계획 및 자금조달방안 제출하는 경우
- 그 외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 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나. 구상채무의 종류 (안 제27조제2항)

○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 공개 시 적용하는 구상채무 종류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, 전세금안심대출보증,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

다. 정보공개 절차·방법 등 (안 제27조제3항 내지 제5항)

-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성명 등 공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,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에 소명서를 서 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
-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소명서를 참작하여 성명 등 공개 여부를 심의·의결
- 공사는 성명 등 공개한 후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공 개대상자 등의 소명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・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 삭제

라.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(안 제28조)

-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, 위원회는 위원
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을 위원으로 구성
- ㅇ 위원장은 위원 중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, 위원은 공사

소속 임·직원,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 등, 부교수 이상, 그 외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함

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

- 전자우편 : teipark@korea.kr

- 팩스 : 044-201-5530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,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/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(전화 044-201-334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